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08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피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변론 종결 2023. 3. 16.

판결 선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1,879,99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6.8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나. 40,816,064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8.06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다. 5,897,787원 및 그중 5,740,984원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30,483,686원 및 그중 29,829,699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7.9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5,301,553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6.65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7,948,713원 및 그중 27,6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4.7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48,331,749원 및 그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7.34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60,900,762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6.4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30,595,405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6. 8.까지 연 7.64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42,707원 및 그중 41,130원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아. 3,078,802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2020. 9. 25.자 증여계약을 91,423,3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91,423,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의 신용카드이용계약 및 대출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6. 1. 22.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3호증). 피고 회사는 2016. 3. 30. 원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보증한도 6,000만 원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8. 26. 원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 받았고, 피고 B은 보증한도 2,400만 원으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2호증).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은 2021. 1. 19.을 기준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

[표1] 피고 회사 대출내역(원)

1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3. 30.	40,000,000	8.062%	816,064	40,816,064
2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6. 8. 26.	100,000,000	6.854%	1,879,990	101,879,990
3 신용카드 이용대금	2016. 1. 22.	5,740,984	13.6%	156,803	5,897,787
계		145,740,984		2,852,857	148,593,841

2) 한편, 피고 B은 개인사업자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15. 10. 30., 2017.

10. 20., 2018. 5. 16., 2018. 6. 8., 2019. 6. 7. 및 2019. 9. 10.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는 한편(갑 제5 내지 10호증), 2008년 및 2018년경2)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갑 제11, 12호증). 피고 B의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의 합계액은 2021. 1. 19.을 기준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다(갑 제13호증).

[표2] 피고 B(D) 대출내역(원)

1 중소기업 자금대출	30,000,000	2015. 10. 30.	29,829,699	653,987 (7.935%)	30,483,686
2 중소기업 자금대출	18,000,000	2017. 10. 20.	15,000,000	301,553 (6.657%)	15,301,553
3 중소기업 자금대출	50,000,000	2018. 5. 16.	27,600,000	348,713 (4.76%)	27,948,713
4 중소기업 자금대출	47,500,000	2018. 6. 8.	47,500,000	831,749 (7.341%)	48,331,749
5 중소기업 자금대출	60,000,000	2019. 6. 7.	60,000,000	900,762 (6.48%)	60,900,762
6 중소기업 자금대출	50,000,000	2019. 9. 10.	30,000,000	595,405 (7.649%)	30,595,405
7 신용카드 이용대금		2020. 10. 26.	41,130	1,577 (16.8%)	42,707
8 신용카드 이용대금		2020. 11. 10.	3,000,000	78,802 (19.6%)	3,078,802
계			212,970,829	3,712,548	216,683,377

3) 피고 B은 2020. 10. 17.부터, 피고 회사는 2020. 10. 22.부터 위 각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의 체결

1) 피고 B과 피고 C은 2004.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C이 2020. 7. 2. 피고 B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4399호)을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인 202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0. 10. 8.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4호증).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301,200,000원(이후 263,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5. 3. 5.에, ②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19. 3.

18.에, ③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9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2020. 7. 17.에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0. 10. 8. 각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20. 10. 13. 위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0. 10. 8.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02,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4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일부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위와 별개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초사실 표1 기재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위 표1 기재 대출금 원리금 중 일부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위와 별개의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초사실 표2 기재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대출원리금 101,879,99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6.85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2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대출원리금 40,816,064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8.06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③ 신용카드 이용대금 5,897,787원 및 그중 5,740,9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대출원리금 30,483,686원 및 그중 29,829,69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7.935%의, ② 대출원리금 15,301,553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6.657%의, ③ 대출원리금 27,948,713원 및 그중 27,6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4.76%의, ④ 대출원리금 48,331,749원 및 그중 47,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7.341%의, ⑤ 대출원리금 60,900,762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6.48%의, ⑥ 대출원리금 30,595,405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1. 6. 8.까지 약정이율인 연 7.649%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⑦ 신용카드 이용대금 42,707원 및 그중 41,1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⑧ 신용카드 이용대금 3,078,802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91,423,395원(= 291,753,729원 - 200,330,334원)⁴⁾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91,423,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 일부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와 별개로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다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무법인 H에 대한 2023. 2. 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은 2004. 11. 3. 피고 B과 혼인한 후, 2020. 12. 8. 이혼조정(서울가정법원

2020년 4월 580)이 성립될 때까지 약 16년간 자녀 2명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 C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2020. 7. 2.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자녀들의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을 구하는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이던 2020. 9. 25.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증여하고 피고 C은 위자료, 분할연금 청구 등을 포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0. 12. 8.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을다 제1호증).

다) 피고 C은 2020. 10. 8.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7,813,880원과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F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443,930원, 그리고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F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81,081,521원, 총 389,339,331원(= 217,813,880원 + 90,443,930원 + 81,081,521원)을 각 상환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을다 제6호증의 1, 2).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자 E, F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채권자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H는 '피고 C이 2020. 10. 8. G으로부터 252,000,000원을 대출받아 선공제금(137,536원)을 제외한 대출금 전액(251,862,464원)을 법무법인 H 계좌로 송금 하였고, 부족금 137,476,867원(= 389,339,331원 - 251,862,464원)은 같은 날 피고 C이 법무법인 H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였다(법무법인 H에 대한 2023. 2. 1.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또한 피고 C은 G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제외한 위 137,476,867원은 I, J, K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L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을다 제2호증 1, 2쪽). 이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 389,339,331원(= 217,813,880원 + 90,443,930원 + 81,081,521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7억 9,000만 원의 1/2에 근사한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변제한 채무 중 일부는 피고 B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채무이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3. 16.자 제5회 변론기일, 2023. 1. 11.자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F인 각 근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피고 회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B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피고 M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C이 상환한 채권자 F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2015.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채권자 E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 대출로 위 대출금 채무 중 1/2는 피고 C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의 근저당권채무를 피고 C 역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를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잔액 572,186,120원5)의 1/2인 약 2억 8,609만 원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한 주식회사 F 근저당권채무액 171,525,451원(= 90,443,930원 + 81,081,521원)을 비교해보면 약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자녀는 14세, 15세로 피고 C이 안정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이혼 성립 이후에는 주부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터 잡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당초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매월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매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른 점 등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정석

판사김민순

판사강소혜

별지

- 1)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경우에는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갑 제4호증)상 최종 이자계산 만기일이 2021. 1. 19.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발생 이자로 계산하였고,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이자만기일이 2021. 1. 18.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발생 이자로 계산하였다.
- 2) 신용카드 이용계약서(갑 제11호증)에는 체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서류에 인쇄된 날짜로 미루어보아 2018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3) 표1 기재 이자와 마찬가지로 채권계산서 산출근기표(갑 제13호증)상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이자만기일은 2021. 1. 19.이고, 중소기업 자금대출 이자만기일은 2019. 1. 18.이므로, 각 그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계산한 결과이다.
- 4)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시세는 79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액의 합은 389,339,331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400,660,669원(= 790,000,000원 - 389,339,331원)이고, 그 1/2 지분 상당의 가치는 200,330,334원이다.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291,753,729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330,334원을 초과한 부분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 5)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시세(790,000,000원)에서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217,813,880원)를 공제한 금액이다.